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0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한지아·고동진·최보윤

박정하 · 임이자 · 조경태

서일준 • 유용원 • 김재섭

박성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, 독촉 및체납처분,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그 예로, 1년 이상, 1천만원 이상의 장기·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 년 말 9,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,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.

이에 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등과 같이 공 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 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 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 려는 것임(안 제83조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0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3조의2(출국금지 요청)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(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 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)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 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공단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,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험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(저 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장	현 행	개 정 안
한 것을 포함한다)의 총액이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공단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, 체납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		제83조의2(출국금지 요청) ① 공 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 협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(제8 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,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 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것을 포함한다)의 총액이 5 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 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공단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③ 공단은 체납액 징수,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 으로 인해 출국금지 사유가 없 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 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

 ④
 제1항부터
 제3항까지에서

 규정한
 사항
 외에
 출국금지
 및

 그
 해제의
 요청
 등의
 절차에

 관하여
 필요한
 사항은
 대통령

 령으로
 정한다.